

# 교내학술연구비 관리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학술연구비중앙관리규정 제9조에 따라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교수들의 창의적 연구 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교내학술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의 배정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비종류 및 용어정의)** 본 규정에서 정의하는 연구비의 종류 및 그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임교수 지원 연구비 : 해당 학년도에 신규로 임용된 교원에게 연구기반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비
2. 전문학술지게재논문-전문학술저서 장려 연구비 : 학년도별 연구분야 실적 평가를 통하여 학술연구수준의 향상에 기여한 교원에게 성과급으로 지원하는 연구비
3. 논문게재 지원 연구비 :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논문 게재시 게재료를 지원하는 연구비
4. 학술대화·세미나 지원 연구비 : 학제간 학술정보교류 및 학술활동을 진작시키고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연구비
5. 외부초청강연 지원 연구비 :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할 때 소요되는 연구비 지원
6. 정책개발연구과제 연구비 : 대학발전추진위원회나 건학이념연구위원회 등에서 발주하여 지원하는 연구비
7. 대응투자 지원 연구비 : 본교가 정책적으로 선정한 국가 R&D 사업 등 대형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응투자 연구비
8. 학술연구발전위원회 : 학술연구비중앙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침, 책정,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연구정보처 산하 위원회

**제3조(적용대상)**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및 직원으로 한다. 다만, 직원은 정책개발연구과제로 제한 한다.

## 제2장 신임교수 지원 연구비

**제4조(연구비 신청)** 연구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소정의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수지원 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

**제5조(연구기간)**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연구비 지급금액)** 연구비 지급금액은 【별표 1】 과 같다.

**제7조(연구비 집행)** 연구비의 집행은 연구 개시일로부터 하며,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비를 지급 받은 후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등 연구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변경 승인 신청서를 논문 투고 이전까지 교수지원팀에 제출하여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3.1>

**제9조(연구결과 보고)**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정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게재가 확정되었거나 별쇄본 혹은 전자매체로 발행된 경우는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3.1>

② 국내전문학술지 지원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된 단독인 연구업적물을 교수지원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

③ 국제전문학술지 지원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SCI·SSCI·AHCI·SCIE·SCOPUS 학술지에 게재된 단독 혹은 주저자의 연구업적물을 교수지원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저자는 논문저자 소속이 본교이며, 저자수는 4인 이내이어야 한다. 더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1>

④ 연구결과 발표논문에는 반드시 “이 연구는 0000학년도 선문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영문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Sun Moon University Research Grant of 0000)”이라고 표기하여야 하며, 지원기관을 병기할 수 없다. <개정 2013.3.1>

**제10조(연구비 회수)**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술연구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 승인을 받아 연구비 전액을 회수조치 할 수 있다.

1. 본교를 이탈하게 되었거나 연구의사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결과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다만,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집행 잔액만을 회수할 수 있다.

### 제3장 전문학술지게재논문·전문학술저서 장려 연구비

**제11조(기본기준)** ① 본교 교원 자격으로 발표 또는 출판한 해당 연구 업적이어야 한다.

② <삭제 2008.10.15>

**제12조(대상실적)** ① 국제실적은 SCI·SSCI·AHCI·SCIE·SCOPUS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국제전문학술저서로 한다. <개정 2013.3.1>

② 국내실적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 및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국내전문학술 저서로 한다.

**제13조(지원기준)** 학년도별 교수업적평가 중 해당 연구분야 점수를 별도로 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10.15, 2013.3.1>

**제14조(심사 및 지급)** ① 지원 단위는 학년도별 1년(해당 학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으로 한다.

② 심사 시기는 학년도별 교수업적평가 후 1개월 이내로 한다.

③ 심사기준은 시행세칙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한다.

④ 연구비 지급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승인 후 2주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5조(지급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은 연구비 지원을 제한한다.

1. 각종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고 연구결과 보고 의무를 심사일까지 다하지 않은 교원
2. 외부수탁연구비의 지원을 받고 연구결과가 불충실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지원 부자격자로 판정된 자로서 그 지원기관의 연구비 지원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교원

## 제4장 논문게재 지원 연구비

**제16조**〈삭제 2008.10.15〉

**제17조**〈삭제 2008.10.15〉

**제18조**〈삭제 2008.10.15〉

**제19조**〈삭제 2008.10.15〉

## 제5장 학술대회·세미나 지원 연구비

**제20조(지원분야)** 지원 분야는 전 학문분야로 한다.

**제21조(지원대상)** 교내에서 학술단체의 학술대회를 유치 또는 세미나를 주관하는 학부·과(전공) 등으로 한다.

**제22조(신청시기)** 신청 시기는 매학기 1회 신청(2월, 8월중)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지급제한)** 전 학년도 본 학술대회·세미나 지원 연구비를 받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부·과(전공)에게는 해당 학년도에 학술대회·세미나 지원 연구비를 지원 하지 않는다.

**제24조(지원기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원한다.

1. 학술단체가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 학술대회로 연간 1학회 당 1개 대회에 한한다.
2. 교내학술세미나는 연간 학부·과(전공)별 1회에 한한다.
3.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최근 지원 실적이 없는 학부·과(전공)와 본교 교원이 좌장인 학술대회에 우선 지원한다.

**제25조(지원한도)** 지원 금액은 배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별표 1】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26조(결과보고서 제출)** 주관 학부·과(전공)장은 행사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소정양식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장 외부초청강연 지원 연구비

**제27조(연구비의 신청)** 연구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소정의 외부초청강연연구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강연주관)** 연구비 신청 교원은 강연회 전체를 주관한다.

**제29조(지원비 조정)** 연구정보처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을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한다.

## 제7장 정책개발연구과제 연구비

**제30조(정책개발연구과제 연구비)** 대학 정책개발이나 행정실무와 직결된 과제로서 그 과제의 결정, 발주, 연구비 배정, 선정 등 모든 절차는 따로 정한다.

## 제8장 대응자금(Matching Fund) 지원 연구비

**제31조(대응자금 지원 연구비)** 선정된 국가 R&D사업 등 대형과제로서 대응자금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이를 지원한다.

## 제9장 보칙

**제32조(위임규정)** 본 규정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연구비 관련 시행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3조(연구종료 후의 학교재산으로의 귀속)** 교내학술연구비로 기자재를 구입하면 구입과 동시에 학교재산으로 귀속되며, 연구를 위하여 구입한 도서와 소프트웨어 등은 연구수행 후 학교재산으로 등재하고 대출형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34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정관 및 제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1997.5.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1998.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의 개정 시행일 이전의 교내학술연구비관리규정은 전면개정으로 시행일 기준으로 폐지한다.

②이 규정 제3장 전문학술지게재·전문학술저서 장려 연구비는 2005학년도 실적을 2006학년도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다만, 2004학년도 실적은 종전 기준에 의하여 2005학년도에 시행한다.

③이 규정의 개정 시행일 이전의 연구년·저서분야는 2005학년도까지 종전 기준에 의하여 시행한다.

**부칙<2008.10.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내학술연구비 지급금액 기준<개정 2008.10.15>

(단위 : 원)

구 분	내 용		금 액	비 고
신임교수 지원 연구비	국내전문학술지 지원과제	기본지원비	4,500,000	최대 12,000,000
	국제전문학술지 지원과제	기본지원비	4,500,000	
		추가지원비	7,500,000	
전문학술지게재·전문학술 저서 장려 연구비	평가점수 1점당		10,000	개인별 지급금액 제한 없음
학술대화·세미나 지원 연구비	학술대회		최대 1,200,000	리셉션 경비
	교내학술세미나		최대 400,000	강사료, 준비비